

제330회 임시회
2014. 6. 20.(금)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 6. 20.(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개정안 : 2014년 6월 2일

- 수정안 : 2014년 6월 10일

다. 회부일자

- 개정안 : 2014년 6월 5일

- 수정안 : 2014년 6월 10일

라. 상정일자 : 2014년 6월 11일

- 제3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수정 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가. 제안이유

-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로 이원화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부지사로 행정업무 기능을 일원화하고, 정무업무 전담을 위하여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명칭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 한시기구인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존속기한 연장사항 및 그 밖의

정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부지사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 정비>

○ 경제부지사 명칭변경

- 경제부지사 → 정무부지사

○ 부지사 분장사무 조정

- 행정부지사 : 도 행정사무 전반(경제, 건설, 바이오산업, 환경 포함)
- 정무부지사 : 정무업무 및 기타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등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 혁신도시관리본부

- 2014년 6월 30일까지 → 2015년 6월 30일까지 (1년)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로 이원화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부지사로 행정업무 기능을 일원화하고, 정무업무 전담을 위하여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명칭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하여 충청북도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간 업무조정, 혁신도시 운영지원 및 개발계획,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기타 혁신도시 건설 추진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자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여(2012.

- 8.31) 신설한 충북 혁신도시관리본부의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 2014년 6월 현재 충북혁신도시 진행 상황을 보면 부지조성, 가로등, 진입도로공사 등 혁신도시 기반공사 추진은 공정률이 98%이고, 공공기관 이전 추진은 총 11개 기관 중 이전이 1곳, 착공이 8곳, 미착공이 2곳임
 - 민선 6기 출범에 맞추어 행정업무를 일원화하고 정무기능을 강화하여 원활한 도정업무를 추진하고 충북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충북 혁신도시관리본부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특별한 이견이 없음. 다만, 향후 조직을 설계할 경우 조직의 안정성도 고려하여 신중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수정의결

7. 수 정 안 요 지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 6. 11, 김형근 의원
- 수정이유
 - 본 개정조례안 대로 시행될 경우, 민선 6기 출범한 이후에 정무부지사 신규임용시까지 경제부지사가 정무부지사 역할을 하게 됨.
 - 따라서, 7월 1일자로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변경 하는 경과 조치를 두는 것이 합리적.

○ 수정 주요내용

- 부칙의 조례 시행일을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하는 것으로 수정 하고,
- 7월 1일자로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변경하는 부칙의 경과 조치를 신설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한 수정안 등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

1. 수정이유

민선 6기 출범 이후에 정무부지사 신규임용시까지 경제부지사가 정무부지사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변경 하는 경과 조치를 두고, 조례의 시행일자를 7월 1일자로 수정함.

2. 주요내용

-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경제부지사는 이 조례에 의해 임명된 정무부지사로 본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정무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
2. 의회·정부·국회·정당·사회단체 등과 관련되는 업무 협조
3. 도정 홍보 및 언론기관 협조
4. 경제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행정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충청북도조례 제3496호(2012. 8. 3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4년 6월 30일”을 “2015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경제부지사는 이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정무부지사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②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③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 ④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 ⑤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과 제15조제3항 중 “경제부지사”를 각각 “행정부지사”로 한다.
- ⑥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 ⑦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 ⑧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 ⑨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 ⑩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 ⑪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 ⑫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 ⑬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 ⑭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 ⑮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별표 중 일반행정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소 관 부 서	
	주관실국	부 서
일반행정 분 과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의회사무처, 공보관, 감사관, 규제개혁추진단 , 기획관리실, 안전행정국,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북부출장소, 남부출장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개정안·수정안에 대한 수정안
<p>제4조(부지사) 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밑에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둔다.</p> <p>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3. 정부, 국회, 언론, 사회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를 행정적·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 경제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제, 건설, 바이오산업, 환경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2. 의회, 정부, 국회, 언론, 정당, 경제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를 행정적·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행과 같음)	<p>제4조(부지사) 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밑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둔다.</p> <p>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그 밖에 도지사를 행정적·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 정무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 2. 의회·정부·국회·정당·사회단체 등과 관련되는 업무 협조 3. 도정 홍보 및 언론기관 협조 4. 경제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행정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수정안과 같음)
<p>부칙(2012. 8. 31 조례 제3496호) 제2조(한시기구) 통합추진지</p>	<p>부칙(2012. 8. 31 조례 제3496호) 제2조(한시기구) 통합추진지</p>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개정안·수정안에 대한 수정안
<p>원단의 존속기한은 2014년 9월 30일까지로 하고,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존속기간은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p>	<p>원단의 존속기한은 2014년 9월 30일까지로 하고,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존속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p> <p>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별표 중 일반 행정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정무부지사 신규임용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신설></p> <p>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②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③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④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⑤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p>	<p>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경제부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정무부지사로 본다.</p> <p>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수정안과 같음</p>

현 행	개정안	수정안	개정안·수정안에 대한 수정안
		<p>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2항과 제15조제3항 중 “경제부지사”를 각각 “행정부지사”로 한다.</p> <p>⑥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p> <p>⑦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4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p> <p>⑧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p> <p>⑨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3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p> <p>⑩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p> <p>⑪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p> <p>⑫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p> <p>⑬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p> <p>⑭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p>	

현행	개정안	수정안	개정안·수정안에 대한 수정안
		<p>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p> <p>⑮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별표 중 일반행정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p>	

※ 개정안 부칙 2조의 일반행정분과

명칭	소관부서	
	주관실국	부서
일반행정 분과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의회사무처, 공보관, 감사관, 규제개혁추진단 , 기획관리실, 안전행정국,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북부출장소, 남부출장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57
----------	-----

제출연월일 : 2014년 6월 2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한시기구인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존속기한 연장사항 및 그 밖의 정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한시기구 연장>

- 혁신도시관리본부
 - 존속기한 : 2014년 6월 30일까지 → 2015년 6월 30일까지(1년)

<다른 조례의 개정> (부칙)

- 규제개혁추진단 신설('14.4.18.)에 따른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별표(분과위원회 설치 및 소관부서) 개정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조례 제3496호(2012. 8. 3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4년 6월 30일”을 “2015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별표 중 일반 행정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소 관 부 서	
	주관실국	부 서
일반행정 분 과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의회사무처, 공보관, 감사관, 규제개혁추진단 , 기획관리실, 안전행정국,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북부출장소, 남부출장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12. 8. 31 조례 제3496호)</p> <p>제2조(한시기구) 통합추진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4년 9월 30일까지로 하고,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존속기한은 <u>2014년 6월 30일까지</u>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12. 8. 31 조례 제3496호)</p> <p>제2조(한시기구) 통합추진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4년 9월 30일까지로 하고,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존속기한은 <u>2015년 6월 30일까지</u>로 한다.</p>

관련법령 발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9조(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657-1
----------	-------

제출연월일 : 2014년 6월 10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로 이원화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부지사로 행정업무 기능 일원화
- 정무업무 전담을 위하여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명칭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지사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 정비> (안 제4조)

- 경제부지사 명칭변경
 - 경제부지사 → 정무부지사
- 부지사 분장사무 조정
 - 행정부지사 : 도 행정사무 전반(경제, 건설, 바이오산업, 환경 포함)
 - 정무부지사 : 정무업무 및 기타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등

<다른 조례의 개정> (부칙)

-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의 제명 변경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 소관 부지사 변경 : 경제부지사 → 행정부지사
- 규제개혁추진단 신설('14.4.18.)에 따른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별표(분과위원회 설치 및 소관부서) 개정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정무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
2. 의회·정부·국회·정당·사회단체 등과 관련되는 업무 협조
3. 도정 홍보 및 언론기관 협조
4. 경제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행정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정무부지사 신규임용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②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③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④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⑤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과 제15조제3항 중 “경제부지사”를 각각 “행정부지사”로 한다.

⑥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⑦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⑧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⑨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⑩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⑪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⑫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⑬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⑭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⑮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별표 중 일반행정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소 관 부 서	
	주관실국	부 서
일반행정 분 과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의회사무처, 공보관, 감사관, <u>규제개혁추진단</u> , 기획관리실, 안전행정국,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북부출장소, 남부출장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p>제4조(부지사) 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밑에 행정부지사와 <u>경제부지사</u>를 둔다.</p> <p>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p> <p>2.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감독</p> <p><u>3. 정부, 국회, 언론, 사회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u></p> <p>4. 그 밖에 도지사를 행정적·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u>경제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u></p> <p>1. <u>경제, 건설, 바이오산업, 환경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u></p> <p>2. <u>의회, 정부, 국회, 언론, 정당, 경제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u></p> <p>3. <u>그 밖에 도지사를 행정적·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u></p>	<p>제4조(부지사) 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밑에 행정부지사와 <u>정무부지사</u>를 둔다.</p> <p>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p> <p>2.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감독</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3. 그 밖에 도지사를 행정적·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u>정무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u></p> <p>1. <u>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u></p> <p>2. <u>의회·정부·국회·정당·사회단체 등과 관련되는 업무 협조</u></p> <p>3. <u>도정 홍보 및 언론기관 협조</u></p> <p>4. <u>경제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u></p> <p>5. <u>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행정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u></p>

관련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 :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정수 :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정수 : 1명으로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

④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부지사를 3명 두는 시·도에서는 그 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 광역시·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도는 3명)으로 한다.

②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하는 부시장·부지사(이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1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이하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④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는 시·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며,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는 해당 시·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그 밖의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시·도의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에 대한 명칭은 조례로 정한다.

⑥ ~ ⑨ (생략)